

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

소관부서 : 의회사무과

제정 1996·3·1 조례 제 4호
 전문개정 1998·11·24 조례 제 251호
 개정 1999·3·5 조례 제 273호
 개정 2003·6·14 조례 제 456호
 개정 2007·10·16 조례 제 682호
 개정 2008·10·20 조례 제 726호
 일부개정 2022·3·7 조례 제180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 처리를 위한 기구와 소속직원의 정원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·10·16, 2022·3·7>

제2조(사무과의 설치)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(이하 “사무과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·10·20>

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조례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 <개정 2008·10·20>

[전문개정 1999·3·5]

[제목개정 2008·10·20]

제3조(사무과장)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을 둔다. <개정 2008·10·20>

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08·10·20>

[전문개정 1999·3·5]

[제목개정 2008·10·20]

제4조(전문위원)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.

② 삭제 <1999·3·5>

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

④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 <개정 2008·10·20>

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6.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.

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[본조신설 2022·3·7]

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「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로 정한다. <개정 2022·3·7>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「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으로 정한다. <개정 1999·3·5, 2003·6·14, 2008·10·20>

부칙

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·11·24 조례 제25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·3·5 조례 제27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·6·14 조례 제45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·10·16 조례 제68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·10·20 조례 제726호>

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“의회사무국”을 “의회사무과”로 한다.

② 「이천시의회 공인 조례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, 제8조제1항, 제8조제2항 및 별표 제4호 중 “사무국장”을 각각 “사무과장”으로 하며, 제5조 본문 중 “사무국”을 “사무과”로 한다.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중 “의회사무국(이하 “사무국”이라 한다)”을 “의회사무과(이하 “사무과”)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,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2항중 “사무국장”을 각각 “사무과장”으로 하고, 제2조제1항중 “지방서기관”을 “지방사무관”으로 한다.

[별표 1] 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 관련)

| 위원회명 | 직 위 | 직 급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| 자치행정전문위원 | 지방행정사무관 |
| 산업건설위원회 | 산업건설전문위원 |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|

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

② 「이천시의회 회의 규칙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3조2항, 제49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중 “사무국장”을 각각 “사무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22·3·7 조례 제180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